

[별표]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도안(제4조 관련)

1. 포장재 재질·구조 등급 표시 도안

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1)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2)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나. 분리배출 표시가 없이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1) 제품·포장재의 정면, 측면에 표시하는 경우

랩 : PVC
재활용 어려움

랩 : PVC 재활용 어려움

(2) 바코드 상하좌우에 표기하는 경우



랩 : PVC
재활용 어려움

2. 도안 작도요령

가. 분리배출 표시가 있는 경우

(1) 분리배출 표시 상단에 표시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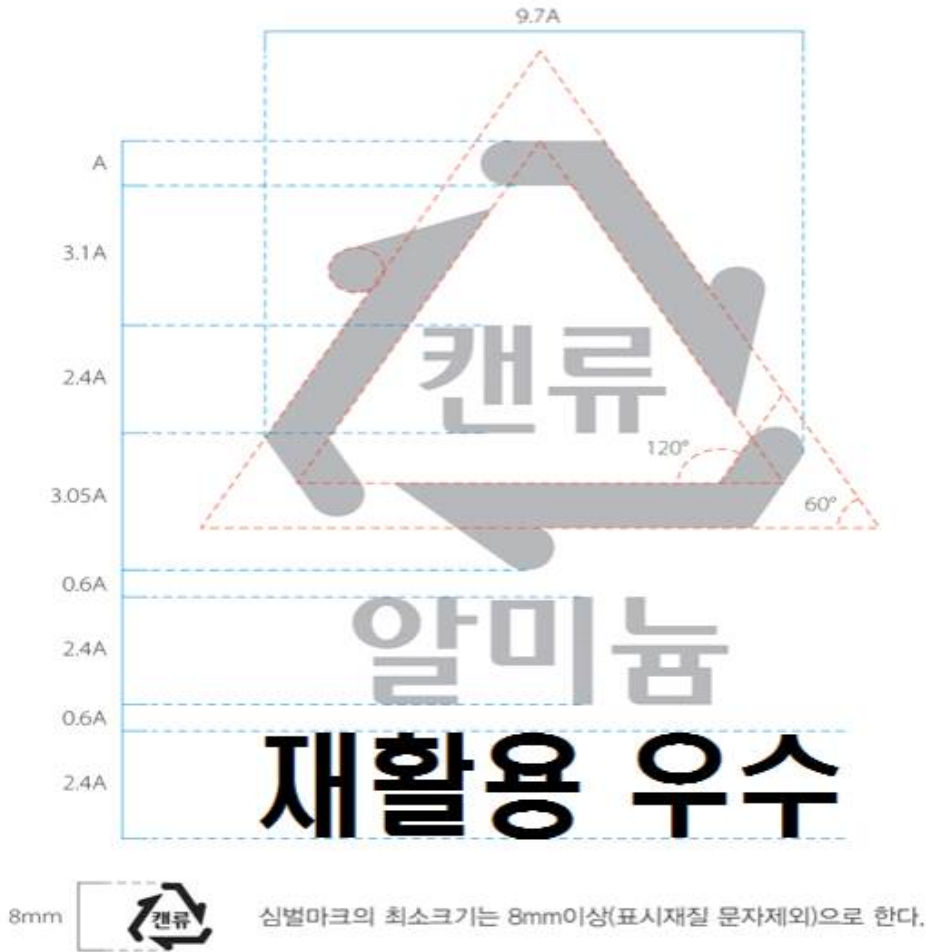


8mm  심벌마크의 최소크기는 8mm이상(표시재질 문자제외)으로 한다.

비고 1. 분리배출 심벌마크 아래 표시재질 문자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로 한다.

2.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2) 분리배출 표시 하단에 표시하는 경우



비고 1. 분리배출 심별마크 아래 표시재질 문자와 포장재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의 간격은 0.6A로 한다.

2. 재질·구조 평가 결과 문구 크기는 2.4A로 한다.

나. 분리배출 표시가 없이 표시를 해야 하는 경우

랩 : PVC 재활용 어려움

랩 : PVC	1A
재활용 어려움	1A

비고: 문구의 최소 크기는 2mm 이상으로 한다.